#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180

발의연월일: 2022. 6. 28.

발 의 자:김상훈·김예지·김태호

배준영 · 송언석 · 신원식

이만희 • 이양수 • 조수진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중 "2022년 12 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
한 감면) ① (생 략)	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②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	
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	
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경감한다.	<u>.</u>
1.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사업	1. <u>2025년 12월 31일</u>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	
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	2

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u>202</u> 5년 12월 31일-
경감한다.	